

## V. 해외사례

### 1. 미국

#### 가. 보험

##### 1) 보험상품의 개념

미국의 금융통합법으로 인용되는 금융현대화법은 보험에 관한 주보험당국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주보험감독은 주보험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 보험상품은 주보험법을 근거로 해석된다. 다만, 주보험법과 은행 및 증권상품을 규제하는 법률간 상충이 있는 경우 법원판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궁극적인 개선방안은 보험업법 개정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제한할 것이므로 주보험법을 중심으로 보험상품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은 보험에 관한 연방정부 차원의 통일적 규율체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주단위로 약간씩 다른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보험법이 다른 주보험법의 전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보험법 체계를 통하여 미국 전체의 보험관련 규제에 대한 시각을 유추 해석할 수 있다.

뉴욕주 보험법에서는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에 대한 추상적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허가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보험계약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뉴욕주 보험법 제1101조에서는 보험계약을 “우발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침해 받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급부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합의 또는 기타 거래<sup>53)</sup>”로 정의하고

---

53) 'Insurance contract' means any agreement or other transaction whereby one party, the 'insurer', is obligated to confer benefit of pecuniary value upon another party, the 'insured' or 'beneficiary', dependent upon the happening of a fortuitous event in which the insured or beneficiary has, or is expected to have

있다. 이와 더불어 우발적 사고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 중 일 당사자의 지배를 실질적으로 벗어나거나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에서의 발생 또는 비발생(발생의 실패)을 의미한다<sup>54)</sup>’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담보, 보증 및 신용보증계약은 담보자, 보증자 또는 신용보증자가 보험자이거나 보험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만 보험사업으로 간주된다고 하고 있다<sup>55)</sup>.

보험계약에 대한 추상적인 정의와 함께 허가 대상이 되는 30여개의 보험계약의 종류를 열거하고 각각 정의하고 있다<sup>56)</sup>. 세부보험계약의 종류는 <표 V-1>과 같다.

<표 V-1> 뉴욕주 보험법의 세부 보험상품 분류

	세부보험계약의 종류
뉴욕주보험법 제1113조	생명보험, 연금, 상해·건강보험, 화재보험, 재산보험, 누수보험(water damage), 도난보험, 유리보험, 보일러·압축기보험, 승강기보험, 동물보험, 충돌보험, 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산업재해보상·사용자책임보험, 보증보험, 신용보험, 권원보험(title), 자동차 및 항공 상해 보험, 자동차·항공기체보상보험, 해상·내륙해상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 잔여가치보험(residual value), 모기지보증보험, 실업신용보험(credit unemployment), 재정보증보험(financial guaranty), 차액보험(gap), 상금보상보험(prize indemnification), 서비스계약보상보험(service contract reimbursement), 법률서비스보험(legal service), 비자발적실업보험 등과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종류의 보험

이 중 생명보험은 인간의 생명에 관한 일체의 보험 및 그것에 부속하는 일체의 보험을 말하며, 생존급부(endowment benefits), 재해사망시 부가 급부,

at the time of such happening, a material interest which will be adversely affected by the happening of such event.

54) (2) 'Fortuitous event' means any occurrence or failure to occur which is, or is assumed by the parties to be, to a substantial extent beyond the control of either party.

55) 'Contract of warranty, guaranty or suretyship' means an insurance contract only if made by a warrantor, guarantor or surety who or which, as such, is doing an insurance business.

56) 뉴욕주 보험법 제1113조.

계약실효를 저지하는 부가급부 사망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선불급부(accelerated payment), 특별해약 환급금(special surrender value) 등이 포함된다. 사망의 범위에는 (A) 12개월 이내의 여명으로 정의되는 말기증상(terminal illness), 또는 (B) 여명과 관계없이 특별한 의료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학적 상황에 있다고 판단 또는 (C) 피보험자가 만성병 적격시설 또는 내국세입법 제 7702(B) 조 및 부속 규칙소정의 만성질환인 경우는, 적격시설, 재택에서 그 생명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개호를 필요로 하는 병증에 대한 면허 의료 개업의에 의한 증명서에 기초를 둔 사망보험금 또는 특별해약 환급금(special surrender value)의 일부 또는 전부의 선불급부(accelerated payment) (단, 그 선불급부는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국세입법 101조(g) (3) 및 적용가능한 연방법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등을 포함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실업 또는 피보험자가 사설 요양원의 거주자인 경우의 계약실효를 저지하기 위한 부가급부를 포함한다. 생명 보험 때문에 보험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및 보험금 지불 방법 선택권 또는 배당 방법 선택권에 기초를 두고 총당된 금액은, 보험자가 보험법 제4240조에 따라 분리 계정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연금<sup>57)</sup>이란 생명보험의 인가에 기초를 두고 행하여진 지급을 제외하고, 일정기간의 정기적 지급(periodical payment)을 하는 모든 계약 또는 인명의 존속에 따라 일련의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어떤 금액을 지급하거나 계속 지급하는 계약(agreement)을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사망을 또는 생존률의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생존급부를 제공하는 모든 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금의 보험계약성에 대한 보험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의 정의

---

57) 'Annuities' means all agreements to make periodical payments for a period certain or where the making or continuance of all or some of a series of such payments, or the amount of any such payment, depends upon the continuance of human life, except payments made under the authority of paragraph one hereof. Amounts paid the insurer to provide annuities and proceeds applied under optional modes of settlement or under dividend options may be allocated by the insurer to one or more separate accounts pursuant to section four thousand two hundred forty of this chapter(뉴욕주 보험법 제11131조(a)(2)).

에서 말하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사고발생시점에 받거나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고발생에 의한 악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정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뉴욕주 보험법 제1101조(b)(1)(D)에서 세부 보험종목의 취급을 보험업 영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뉴욕주 보험법 제1113조(a)(2)에서 연금을 세부 보험종목으로 열거하므로 연금의 취급은 보험업 영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sup>58)</sup>.

또한, 뉴욕주 보험법에서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손해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과 연금을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금지되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여 겸영을 금지하는 생·손보겸영 금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sup>59)</sup>.

캘리포니아주 보험법 역시 보험계약에 대한 추상적 정의와 더불어 구체적인 종류를 예시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정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법 (Insurance Code)에서는 ‘보험은 일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우발적이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손상 및 책임에 대하여 보상을 약속하는 계약<sup>60)</sup>’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험상품을 열거하고 있다<sup>61)</sup>. 또한 캘리포니아주 보험법 역시 뉴욕주와 마찬가지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분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

58) State of New York Insurance Department, "Sale of Annuities in New York", the Office of General Counsel Opinion on December 18, 2006.

59) 뉴욕주 보험법 제107조 및 제4205조.

60) Insurance is a contract whereby one undertakes to indemnify another against loss, damage, or liability arising from a contingent or unknown event.

61) 캘리포니아 보험법 제22조 및 제100조.

<표 V-2> 캘리포니아주 보험의 분류

	분류
캘리포니아주 보험법 제100조	생명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소유권증서보험, 보증보험, 장애보험, 유리보험, 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일반운송보상보험, 난방기·압축기 보험, 도난보험, 신용보험, 스프링클러보험, 수송보험, 자동차보험, 주택저당보험, 항공보험, 주택저당채무대납보험, 지불불능(insolvency)보험, 법률(legal)보험, 기타손해보험

2) 보험업의 개념

미국 뉴욕주 보험관련 법에 의하여 감독당국에 면허(license), 등록(registration) 등을 요구받는 규제대상 보험업은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사고 및 건강 보험업, 보험중개업, 보험대리업, 보험자문업, 초과액보험중개업 등으로 구분된다.

보험업이란 주외로부터 우편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수행된 하기의 행위도 포함하여 (A) 보험자로서, 본주내 거주자 혹은 본주내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개인, 조합 또는 단체에 대한 보험증권 또는 보험계약서의 발행 또는 교부 및 그와 같은 보험증권 혹은 보험계약의 신청 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의 신청을 행할 것, (B) 보증인이, 적절한 업무 또는 활동의 단순한 부대 업무로서가 아닌, 본업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또는 체결의 신청하는 것, (C) 보험증권 또는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회비(membership fee), 부과금(assessment) 또는 기타의 대가를 징수하는 것, (D) 보험업 영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어떤 보험종목<sup>62)</sup>(재보험업무를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것, (E) 법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된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상기의 어느 것에 상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고 또는 그 기획하는 것 등이 보험업에 해당하는 업무들이다<sup>63)</sup>.

뉴욕주에서 생명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는 생명보험, 연금보험, 사

62) 뉴욕주 보험법 제1113조에서 정하는 세부 보험종목을 말한다.

63) 뉴욕주 보험법 제1101조(b)(1).

고 및 건강보험, 법률서비스보험, 생명보험의 재보험 등을 제외하고는 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경영금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sup>64)</sup>.

또한, 보험업의 부수업무로 보험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투자관리업무(investment management service)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외 업무도 감독당국의 허가가 있으면 영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sup>65)</sup>. 뉴욕주 보험법 제3222조에 의하여 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보험자에 허용한 기금적립협정(funding agreement)업무는 보험계약의 정의와 관계없이 기금적립협정의 체결 또는 교부를 보험업 영위(doing an insurance business)로 간주하고 있다. 기금적립협정은 보험업이 인가된 사람 또는 그 자회사에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업 인가를 받지 않은 단체(entities) 및 개인에 대해서는 (i) 합중국 또는 외국에 설치된 1974년 ERISA 소정의 종업원퇴직연금제도에 의거하는 연금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ii) 내국세법 제501조 (c)의 과세면제 단체 혹은 유사단체의 활동 자금을 적립하기 위해, (iii) 연방 정부, 주 정부, 외국 또는 그러한 정치 하부조직 혹은 그러한 기관의 어떠한 제도의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iv) 청구권 변제의 정기 지불을 제공하는 협정의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또는 (v) 2500만 달러를 넘는 자산을 가지는 법인의 어떤 제도에 대한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 연기금 대행업무이외에도 보험회사가 적립협정을 이용하여 연기금 관리대행업무를 할 수도 있고, 보험증권화(insurance securitization)거래에서 해당거래를 인수한 기업 또는 해당거래의 발생손해에 대하여 증권을 발행한 기업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기금적립협정을 발행할 수도 있다고 한다<sup>66)</sup>.

그러나 기금적립협정은 사망률 혹은 질병발생률의 우발성에 의거한 보험자에 의한 지급 또는 보험자에 대한 지급을 약정해서는 안 되고, 1이상의 분리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보험감독관은 (i) 기금적립 협정의 양식, (ii) 기금적립협정을 발행하는 보험자가 적립해야 할 준비금, (iii) 기금적립협정에 의거

64) 뉴욕주 보험법 제4205조.

65) 뉴욕주 보험법 제1714조.

66) State of New York Insurance Department, "Indemnity Agreements Related to the Securitization of Funding Agreements", the Office of General Counsel Opinion on May 30, 2000.

지급해야 할 기금의 회계 및 보고, (iv) 기금적립협정의 가입자 및 가입 전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의 개시, 또는(v) 보험자를 대리하여 기금적립협정을 판매하는 사람의 자격과 보수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를 교부할 수 있다.

나. 은행

1) 은행상품의 개념

미국의 금융관련 법률에서 예금(deposit)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증권법상 증권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는 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에 대한 연방최고법원의 판례에서는 연방은행법의 규제를 받는 은행의 예금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규제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미국의 예금보험공사(FDIC)의 근거법에서 부보대상 예금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양한 예금보험 부보대상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금을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근거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금(deposit)의 개념은 <표 V-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V-3> 미국 예금보험공사법에서 예금의 정의

	주요 내용
예금보험공사 근거법 (FDIC 제3조 1항)	“예금”이라 함은 (1) 은행 또는 저축조합(savings association)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수취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미지급 현금 잔액 또는 그 등가물로서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로 상업예금, 당좌예금, 저축예금 또는 정기예금 계좌에 대기했거나 대기하여야 할 것. 또는 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저축증서(thrift certificate), 투자증서(investment certificate), 채무증서(certificate of indebtedness) 또는 기타 유사한 이름의 증서 또는 예금계좌에 대하여 발행되고 은행 또는 저축조합이 보증한 수표나 환어음(draft), 또는 은행이나 저축조합에게 일차적 지급 의무가 있는 신용

	<p>장(letter of credit) 또는 여행자 수표(traveler's check) ...</p> <p>(2) 은행 또는 저축조합이 수취 또는 보유하고 있는, 본 법에서 정의 된 바의 신탁자금(trust funds)으로서, 동 은행 또는 저축조합의 신탁부에서 보유하고 있든 다른 부에서 보유 또는 예치하고 있든 관계가 없다.</p> <p>(3) 은행이나 저축조합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in the usual course of business) 특별한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수</p>
	<p>주 요 내 용</p>
<p>예금보험공사 근거법 (FDIC 제3조 1항)</p>	<p>취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그 등가물의 대기액으로서 그 법적 관계를 불문하고 다음의 항 등을 포함한다. 신탁 자금(escrow fund)<sup>67)</sup>, 은행 또는 저축조합 또는 기타 에 대한 채무(obligation)의 담보(security)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딜러의 지급준비금(dealers reserve)) 또는 은행 또는 저축조합이 대출한 유가증권에 대한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채무의 만기 상환을 위하여 채무자가 예치한 자금, 미국채에 대한 청약금(payment on subscriptions)으로 예치한 자금, 증권의 배정 또는 매입을 위하여 예치한 자금, 은행인수어음(acceptance) 또는 신용장의 지급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원천징수세액(withheld tax) 등</p> <p>(4) 미결제 환어음(outstanding draft)(은행 또는 저축조합이 다른 은행 또는 저축조합에 가지고 있는 예금잔고를 청구하도록 한 권고 또는 권한을 포함), 자기앞수표(cashier's check), 송금환(money order), 또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용역대전(payment for services), 배당금(payment for dividend) 또는 물품구입대금(payment for purchase)의 지급 등을 포함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행된 기타 수표</p> <p>(5) FDIC의 이사회가 통화감독관(Comptroller of Currency)과, 저축기관감독국장(Director of the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및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p>



	the Federal Reserve System)와의 협의 하에 통상적인 예금채무(deposit liability)라고 판정하여 규정으로 열거하고 있는 은행 또는 저축조합의 기타 채무
--	--

주 : 미국 FDIA 3조 (l)항의 예금의 정의를 해석한 예금보험공사 KDIC 금융연구 10월호의 「전자화폐의 예금보험 적용가능성」연구를 참조함.

한편, 예금과 대응하는 은행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대출 및 여신 제공 서비스에 관하여 미국의 금융관련법은 이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 2) 은행업의 개념

미국에서는 예금과 관련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에 대한 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예금 및 여신 등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영위할 수 있는 허가요건을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의 영업허가를 받은 금융업자는 예금 및 여신 관련 금융업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예금관련 금융기관으로 인정되는 금융기관을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다<sup>68)</sup>.

기본적인 미국 은행업의 업무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연방법<sup>69)</sup> 미국

실질적인 Title 12 Banks and Banking 의 은행에 관련한 조항에 국법은행(national banks)의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국법은행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업무권한으로 ‘어음 등의 채무증서의 할인, 예금의 수취, 통화 등에 대한 교환 및 매매, 대출, 제한된 범위의 채권업무 등’을 열거하여 나열하고 있다. 한편 동법에서는 위에 열거된 국법은행이 행할 수 있

67) 신탁자금(escrow fund)이란 계약에 의해 채무가 상환될 때까지 제3자가 보유해야 하는 자금

68) 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ory and Interest Rate Control Act of 1978 Sec. 202 1. the term ‘depository institution’ means a commercial bank, a savings bank, a trust company, a savings and loan association, a building and loan association, a homestead association, a cooperative bank, an industrial bank, or a credit union.

69) US code Ch. 12 (Banks and Banking) 24.

는 허용 업무와 더불어 허용이 금지되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은행이 영위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금융겸업화의 영향으로 업무영역에 대한 확대 요구가 증가했으며 이를 위한 금융제도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했다. 결국 Gramm-Leach-Bliley Act의 제정으로 인하여 은행·증권·보험회사의 상호 업무영역의 확대를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동법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시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제103조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A) 본원적 금융업무 또는 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와 (B) 본원적 금융업무에 보완적인 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 예금기관과 금융시스템에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원적 금융업무와 보완적인 금융업무의 범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일부 증권업무(Broker-Dealer)와 보험대리점으로서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다. 증권

##### 1) 증권상품의 개념

미국의 증권상품 관련 법규는 증권관련 감독기구인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의하여 제정된 증권법(Securities Act)과 증권거래소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 그리고 파생상품관련 감독기구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에 의하여 제정된 상품거래소법(Commodity Exchange Act)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증권 상품인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증권법에서,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상품거래소법에서 각각 규정하여 정의하고 있다.

##### 가) 증권(security)

미국 1933년 증권법상 증권에 대한 정의에 속하는 증권으로는 노트(note), 주식, 자기주식(treasury stock), 증권선물, 담보채권(bond), 담보채권(debenture), 채무증서 등과 추상적 개념의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과

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도 포함하고 있다. 이중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은 1946년 Howey 사건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금전을 오로지 받기 인 또는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의 기대를 가지는 공동사업에 투자하는 거래”로 판시한 바 있다. 개념적으로는 투자성보험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 나) 파생상품

증권선물은 증권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파생상품은 기본적으로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서 규제하고 있다. 규제대상 상품선 물은 ‘상품의 미래인도를 가능하게 하는 판매계약과 관련된 모든 계좌, 합의 (옵션, 콜, 풋 등 포함) 및 거래’로 정의함에 따라 날씨파생도 상품선물의 일 종에 해당하나, 상품거래법상에서 날씨파생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런 규제없이 날씨파생을 취급할 수 있다.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회계처리는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제정한 SFAS 133(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33)에 따르고 있으나, 장외파생거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성격에 따라 보험 또는 파생 상품회계처리를 실거래의 성격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따라야 하는 실정이다. 전미보험감독위원회(NAIC) 백서의 날씨파생상품에 대한 요구는 날씨파생상 품과 기타 비보험 유사상품들은 보험상품으로 분류되고 규제되는 것을 회피 하기 위하여 비보험상품으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주로 기온의 변화로 인한 위 험을 담보(heating and cooling degree days)하는 것으로서 날씨파생상품 소 비자보호를 위하여 보험상품으로 분류되고 규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2) 증권업의 개념

미국 증권관련 법규는 증권, 파생상품과 관련한 금융업에 대한 업무범위 규제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 증권 및 파생상품의 추상적인 정의 이 외에는 금융업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포 괄주의 방식의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 및 파생상품 관련 금융업의 경우 자유로운 상호 경영이 가능하며 부수적인 업무의 경영도 원칙적으로 가

능하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험업, 증권업, 은행업간의 고유업무에 대한 상호 경영 금지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완전하게 자유로운 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sup>70)</sup>.

미국 증권관련 법률에서는 증권의 중개업(broker), 증권의 자기매매업(dealer), 증권과 관련된 투자자문업(investment adviser), 증권의 인수업(underwriter) 등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등록을 해야 영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법은 증권의 중개업과 자기매매업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sup>71)</sup>. 동법에서는 중개업에 대하여 '타인 계좌를 위하여 증권거래를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자기매매업의 경우에는 '자신의 계좌를 위하여 증권의 매매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투자자문업자법(Investment Advisers Act)에서는 증권과 관련된 투자자문업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72)</sup>. 증권의 인수업의 경우에는 등록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나 인수업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영업행위가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73)</sup>.

미국 파생상품과 관련한 법규에서는 파생상품상업(future commission merchant), 파생상품중개업, 파생상품 자기매매업(trader), 파생상품자문업(commodity trading advisor),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운용업(commodity pool operator) 등의 경우에 감독당국에 등록을 함으로서 영위가 가능한 금융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업의 경우에는 상품거래소법에 의하여 감독기구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을 것이 요구되고 있다. 파생상품의 정의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파생상품업을 정의하는데 있어서도 그

70)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에 의하면 증권업과 은행업의 경영을 금지하고 있다. Gramm-Leach-Bliley Act의 제정으로 경영금지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경영금지 원칙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보험법에서도 다른 금융업에 대한 경영을 금지하고 있어 결국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은 상호경영 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71) Securities Exchange Act, Section 15(a)(1).

72) Investment Advisers Act, Section 3(a)., Investment Advisers Act, Section 2(a)(11).

73) Securities Act, Section 2(11).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2. 영국

영국의 금융상품 규제법률은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이다. 금융서비스시장법은 보험, 은행, 증권 등의 모든 금융상품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통합금융법률이다. 따라서 금융서비스시장법에서는 모든 금융상품을 규제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투자물(Investment of a specified kind)'로 금융상품을 정의한다. '투자물'이란 모든 자산, 경제적 권리, 이익권리 등을 통칭하는 개념<sup>74)</sup>으로서 재무부령(Treasury Order)에서는 규제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sup>75)</sup>.

### 가. 보험상품의 개념

통합금융법인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에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 중 보험계약(contract of insurance)에 대한 추상적인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금융서비스시장법의 부속법령인 규제대상행위령(RAO)에서는 세부보험계약을 일반보험계약(contracts of general insurance) 과 장기보험계약(contracts of long-term insurance)으로 구분하여 나열하고 있다<sup>76)</sup>.

---

74) "Investment includes any asset, right, or interest"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2.)

75) 특정투자물(specified investments)을 deposits, contracts of insurance, Shares etc., Instruments creating or acknowledging indebtedness, Government and public securities, instruments giving entitlement to investments, Certificates representing certain securities, units in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rights under a stakeholder pension scheme, options, futures, contracts for differences etc., Lloyd's syndicate capacity and syndicate membership, funeral plan contracts, regulated mortgage contracts, Rights to or interests in investments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76) FSMA Schedule 2 Part II. Investments, RAO Part III. Specified Investments, RAO Schedule 1

<표 V-4> 영국 규제대상행위령에서의 보험계약 분류

	분 류
손해보험계약	상해, 질병, 육상차량,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우송중인 화물, 화재 및 자연재해, 자산 손해, 자동차 손해배상책임, 항공기 손해배상책임, 선박 손해배상책임, 일반배상책임, 신용, 보증, 기타 금전 손실, 법률비용, assistance
장기보험계약	생명 및 연금, 결혼 및 출산, 링크 장기보험, 무기한 건강보험, Tontine연금, 자금상환계약, <b>연금기금운영</b> , 단체보험, <b>사회보험</b> 등

규제대상행위령 제3조에서는 보험계약을 정의하면서 일반보험계약과 장기보험계약에 특별히 포함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보험으로 보증보험, 톤틴, 자본상환계약 또는 연기금관리계약, 생존연금 등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증보험은 은행업무를 하지 않는 자에 의한 것으로 계약체결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에만 이행되지 않고 1회이상의 보험료에 대한 대가여야 한다. 그리고 생존연금(contracts to pay annuities on human life)은 생명보험(contracts on human life)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망률의 사용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 은행상품의 개념

은행상품의 경우에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의 규제대상행위령(RAO)에서 예금의 수취(accepting deposit)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예금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예금과 함께 은행여신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대출에 대한 정의는 금융서비스시장법 또는 규제대상행위령에도 없어 금융상품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예금의 수취 행위라는 것은 ‘예금으로 수취된 금전의 대출’ 또는 ‘예금을 수령한 자의 기타 다른 행위가 예금으로 수취된 금전의 원금이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융행위’를 수반하게 될 경우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러한 예금의 수취 행위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예금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내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예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규정함과 동시에 예금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sup>77)</sup>.

동법에서 예금은 이자나 프리미엄의 존재여부, 요구불예금인지 정기예금인지의 여부, 예금자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자에게 상환(repaid)될 것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예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예금이 재화(property), 서비스(services), 담보제공(giving of security)을 이유로 지급된 금전이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2) 대출

금융서비스시장법은 일반적인 여신서비스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FSA의 지침서 용어집(glossary to the FSA's handbook)에서 신용(credit)의 개념에 대하여 대출 및 지급보증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표 V-5>와 같다.

<표 V-5> FSA의 지침서의 신용의 개념

	내 용
대출	- 대출, 대출의 거치상환, 대출의 이자, 보증, 배상, 기타 어음, 신용의 성질을 띠고 있는 금융수단(단, 보험계약과 관계된 것은 제외)
지급보증	- 만기 때 채무자가 채무의 지급불능(파산 이외의 기타 이유로 인한) 또는 파산으로 인한 채무의 지급불능이 발생할 경우의 손실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계약

## 다. 증권상품의 개념

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에서는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개념을 따로 구분

77) RAO Part II. Specified Activities Ch II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투자물의 범위에 해당 금융상품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따로 개념적인 정의를 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시장법에서 언급된 투자물 가운데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에는 주식, 부채증서, 국공채, 투자권리증서, 예탁증서, 집합투자기구권(units i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관리연금권(rights under a stakeholder pension scheme), 옵션, 선물, 차익거래계약이 있다.

주식(shares etc.)은 기본적으로 법인기업 또는 비법인기업 자본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 부채증서(instruments creating or acknowledging indebtedness)는 국공채로 발행된 경우를 제외한 채무증서(debentures), 무상환사채(debenture stock), 대부주식(loan stock), 채권(bond), 양도성 예금증서(certificates of deposit), 기타 채무를 표시하는 모든 증서 등을 포함한다고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다. 국공채(government and public securities)는 동법에 명시된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발행되고 보증된 대출, 채권, 증권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투자권리증서(instrument giving entitlement to investment)는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로서 일종의 워런트(warrant)를 의미한다. 예탁증서(certificates representing securities)는 계약적 권리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증서이다.

옵션(option)은 증권 혹은 계약적 투자 권리, 영국 또는 기타 국가의 통화, 금 또는 은 등의 재산에 대한 획득이나 처분 권리이며, 선물(future)은 계약이 이루어진 시기에 동의한 가격으로 미래에 재화의 판매 또는 재산의 처분을 약정한 거래에 대한 권리이다. 차익거래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s etc.)은 차익거래계약의 권리 또는 재산의 가치나 지수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거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계약에 대한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 라. 금융업의 개념

영국의 각 금융업에 대한 업무범위 규제는 완전한 포괄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각 금융업은 감독기구인 FSA에 의하여 승인 및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제 이외에 업무범위를 제한



하는 제한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금융회사는 비교적 자유로운 업무범위의 선택이 가능하다.

영국은 겸업주의를 취하고 있음에 따라 금융업의 개념이 개별 상품이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상품을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에는 개별 금융상품의 개념이 존재함과 동시에 이를 기초로 금융업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상품 중심이 아닌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한 '투자물' 개념을 기준으로 금융업을 정립하고 있다.

감독기구의 인가(authorization)를 통하여 규제감독을 요구하고 있는 주요 법적 금융업의 개념은 다음 <표 V-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sup>78)</sup>.

<표 V-6> 영국 금융업의 분류

	내 용
투자물 중개업	- 중개업자로서 투자물 또는 증권인 인수 및 매매거래를 행하는 업무
투자물 자기매매업	- 투자물 또는 증권인 인수 및 매매거래를 행하는 업무
투자물 거래주선업	- 특정한 투자물의 인수를 원하는 타인을 연결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업무
투자물 보관 및 관리업	- 타인의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에 해당하는 업무
집합투자기구 관련업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영위와 관련된 업무 - 인가된 투자신용기구의 업무 - 개방형 투자회사의 단독 대표자 또는 보관자로서의 활동 업무
투자자문업	- 투자물의 인수 또는 매매거래에 있어서 타인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
투자일임업	- 타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 및 관련된 업무
예금수취업	- 예금의 수취와 관련된 업무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업무

78)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

### 3. 일본

#### 가. 보험분야

일본의 경우 보험상품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법과 보험업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상법에서 보험계약이란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생명보험계약과 손해보험계약을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sup>79)</sup>. 한편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에 대해서 "불특정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료를 수수하는 보험, 일정한 우연의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료를 수수하는 보험 또는 기타의 보험의 인수를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sup>80)</sup>.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의 종류를 생명보험(생명보험 및 연금), 손해보험(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책임보험 등), 제3보험(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연금에 대해서는 생존에 대한 정액보상으로 사망을 또는 생존률에 상관없이 모든 연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보증증권업무는 "계약상의 채무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업무중 보험수리에 의거하여 당해 대가를 결정하고 준비금을 적립하며 재보험에 의한 위험의 분산을 행하는 것 기타 보험에 고유한 방법을 이용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보증증권업무에 의한 보증은 보험의 인수로 간주하고 보증에 관한 대가는 보험료로 간주한다.

특히 보험업법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영역 구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동일주체에 의한 면허취득을 금지함으로써 겸영금지 원칙을 취하고 있다<sup>81)</sup>.

79) 일본 상법 제629조, 제674조

80) 일본 보험업법 제2~5조

81) 일본 보험업법 제3조 제3항

<표 V-7> 일본의 생·손보 업무영역 구분

업무영역	생보	손보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대한 정액보상(여명이 일정기간 이내라고 의사에 의해 진단된 신체의 상태를 포함)	○	×
다음 사항에 대한 정액보상 및 실손보상		
1. 질병에 걸린 것		
2. 상해를 입은 것 또는 질병에 걸린 것을 원인으로 하는 사람의 상태	○	○
3. 상해를 입은 것을 직접원인으로 하는 사람의 사망		
4. 1 또는 2에 유사한 것		
5. 1,2,4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것		
일정한 우연의 사고의 손해에 대한 실손보상	×	○

주 : 1) 손해보험의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하여는 질병사망을 예외적으로 허용  
 (상기 분야조정안이 제시된 65년 시점에서 기판매된 상품으로 기득권 인정 차원에서 인정)  
 2) 생명보험의 경우 상해사망만을 보장하는 보험은 불허

일본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sup>82)</sup>. 영위가능한 부수업무의 범위에는 다른 보험회사 및 다른 금융업자의 업무의 대리 및 대행이 가능하고 다른 금융업자의 대출업무의 대행도 가능하며 국채, 지방채 또는 정부보증채 등의 인수업무도 가능하다. 또한 유가증권 사모의 취급, 금융선물거래 및 금융선물거래 등의 수탁 및 금융 등 파생거래, 금융 등 파생거래의 매개, 취급 또는 대리업무도 부수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한편으로 신탁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보험금에 대해서는 신탁의 인수를 행하는 업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83)</sup>.

나. 은행분야

일본의 은행법에서는 예금에 대한 정의를 ‘정기적금’과 ‘정기적금 등’의 두 가지에 형태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정기적금’이란 ‘기한을 정해 일정 금액의 급부를 납부하는 것을 약속하고, 정기 또는 일정한 기간에 몇 차례에

82) 보험업법 제98조

83) 보험업법 제99조 제3항

걸쳐 받아들이는 금전'을 의미한다. 또한 '정기적금 등'은 '정기적금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중도 또는 만료 시에 일정한 금액의 급부를 납부하는 것을 약속하고 해당 기간 내에 받는 부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은행법상에서의 예금의 정의와 더불어 동법에서는 은행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은행법 제4조 제1항의 내각총리대신의 면허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은행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은행업에 대한 정의도 따로 규정하여 은행업에 대한 구분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은행업이란 '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취급과 자금의 대부 또는 어음의 할인, 외환거래를 영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sup>84)</sup>.

---

84) 일본 은행법 제2조

<표 V-8> 일본의 은행영업의 범위

업 무	비 고
- 예금 또는 정기적금 등의 취급	
- 자금의 대부 또는 어음의 할인	
- 외환거래	
- 국채, 지방채 혹은 정부 보증채의 인수 또는 해당 인수와 관련되는 국채 등의 모집 취급	
- 금전 채권의 취득 또는 양도	- 양도성 예금 증서 그 외의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증서 로 표시되는 것을 포함
- 특정 목적회사가 발행하는 특정 사채와 이에 준하 는 유가증권으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인수	
- 단기사채 등의 취득 또는 양도	
- 유가증권의 사모 취급	
- 지방채 또는 사채 그 외의 채권의 모집 또는 관리 의 수탁	
- 은행 외에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의 대리 또는 매개	-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
- 지방공공단체, 회사 등의 금전의 수납 외에 금전 과 관련되는 사무 취급	
- 유가증권, 귀금속 그 외의 물품의 보호 보관	
- 대체업	
- 환전	
- 거래소 금융선물거래 등	
- 금융선물거래의 수탁 등	
- 금리, 통화의 가격, 상품의 가격 그 외의 지표의 수치로서 미리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수치와 장래 의 일정한 시기에 있어서의 현실의 해당 지표의 수치의 차이에 근거해 산출되는 금전의 수수를 약 속하는 거래 또는 이것에 유사하는 거래	-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
- 금융 등 파생상품 거래의 중개, 대리	
- 유가증권 매장 파생상품 거래	
- 유가증권 매장 파생상품 거래의 중개, 대리	

다. 증권분야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감독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증권거래법과 금융선물거래법을 통합하여 만든 법률로써 주식과 채권 등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각종 금융상품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금융상품거래법에는 적용대상인 금융상품 각각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2조 24항에 의하면 유가증권, 예금계약에 근거하는 채권 그 외의 권리 또는 해당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혹은 증서로 법령으로 정한 것, 통화, 장내·외 파생상품거래(상품거래소법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품을 제외), 금융상품에 대해서 금융상품 거래소가 시장 파생상품거래를 원활화 하기 위해 이율·상환기한 이외의 조건을 표준화 하여 설정한 표준물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새로이 등장하는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이용자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여 유가증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유가증권의 종류를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는데 정의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표 V-9>와 같다<sup>85)</sup>.

---

85)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1항

<표 V-9> 일본 금융관련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분류

1. 국채
2. 지방채
3. 특별한 법률에 의해 법인의 발행하는 채권
4.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특정 사채권
5. 사채권(상호회사의 사채권을 포함)
6.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발행하는 출자 증권
7. 협동 조직 금융기관의 우선 출자에 관한 법률 (우선 출자법)에 규정하는 우선 출자 증권
8.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우선 출자 증권 또는 신우선 출자 인수권을 표시하는 증권
9. 주권 또는 신주 예약권 증권
10. 투자신탁 및 투자 법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투자신탁 또는 외국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1. 투자신탁 및 투자 법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투자 증권 혹은 투자법인 채권 또는 외국 투자 증권
12. 대부신탁의 수익증권
13.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특정 목적 신탁의 수익증권
14. 신탁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증권 발행 신탁의 수익증권
15. 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약속어음 가운데,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
16. 저당증권법에서 규정하는 저당증권
17. 외국 또는 외국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 제1호에서 제9호 또는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성질을 가지는 것
18. 외국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 외의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의 대출 채권을 신탁 하는 신탁의 수익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로 내각부령이 정하는 것
19. 금융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가 정한 기준·방법에 따른 제21항 제3호의 거래와 관련된 권리, 외국금융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제21항 제3호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와 관련된 권리, 금융상품시장 및 외국금융상품시장에 의하지 않는 제22항 제3호·4호의 거래와 관련된 권리(옵션)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0. 전 각 호의 증권 또는 증서의 예탁을 받은 자가 해당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된 국가 이외에서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 해당 예탁을 받은 증권 또는 증서와 관련된 권리를 표시하는 것
21.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법령으로 정한 증권 또는 증서

한편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이들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의 가격·이율은 물론 기상의 관측에 따른 수치,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 내지 사회경제의 상황에 관한 통계의 수치로 산출되는 파생상품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 4. 호주

호주의 금융관련법의 통합과정은 1996년 재무성의 주도로 금융시스템조사위원회(Financial System Inquiry, FSI)가 결성된 후 5년여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1997년에 금융시스템 조사보고서(Wallis Report)가 제시되었고,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회사법 및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진행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을 기초로 만들어진 금융서비스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2001, FSRA)이 2001년 9월 의회를 통과하여 2002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호주의 금융서비스개혁법은 기존 회사법의 제7장과 제8장을 구성하던 유가증권 및 선물시장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으며 금융상품(financial product), 소매참여자(retail participants) 및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금융상품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어 금융시장 혹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거래는 금융상품의 범주에 속한다.

##### 가. 금융상품의 정의<sup>86)</sup>

호주에서는 금융상품이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정의를 하고 있으며, 해당상품을 통하여 또는 해당상품의 인수를 통하여 투자(making a financial investment), 위험관리(managing financial risk) 또는 비현금지급(making non-cash payments) 중 하나 이상을 하는 것을 금융상품이라 정의하고 있다. 대출과 같은 신용상품은 금융상품의 범위에 제외하고 있다.

---

86)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 763A조 763B조 763C조 763D조



또한 금융상품을 3단계로 분류하는데 위와 같은 일반적 정의(general defini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1차 분류하고 일반적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명시적 열거를 통하여 금융상품에 포함하는 명시적 포함조항(specific inclusion)을 둘 수 있으며, 일반적 정의와 명시적 포함에 해당하지만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상품의 종류를 정할 수 있는 규정(specific exclusion)을 두고 있다.

투자상품(financial investment)이란 투자자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납부금을 다른 주체(another person)에게 지급하고 ① 상대방은 투자자에게 금전적 회수(financial return) 또는 다른 급부를 생성해 주기 위하여 납부금을 이용하고, ② 투자자는 다른 주체가 납부금을 자기를 위한 금전적 회수 또는 다른 급부 생성(실제 이익 또는 급부의 발생이 없더라도)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③ 다른 주체도 그 납부금이 투자자의 금전적 회수 또는 다른 급부 생성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을 때는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자는 회수금 또는 급부 생성을 위하여 납부금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일일단위의 통제를 할 수 없어야 한다. 투자사례로는 한 사람이 특정회사의 주식을 그 사람에게 발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특정회사에 지급하는 것 또는 한 사람이 투자계획(scheme)에 대해 책임있는 주체로부터 등록된 투자계획에서의 이자 획득을 위하여 금전을 납부하는 것 등이 있고, 투자수익을 생성할 수는 있더라도 부동산과 지금을 구입하는 것과 자기주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 인가를 받은 자에게 금전을 주는 것 등은 금융투자자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리스크(financial risk)의 관리는 특정사건의 발생으로 특정인에게 일어나는 금전적 결과(financial consequences)를 관리하거나 회수금 또는 비용(가격과 이자율을 포함)의 변동 또는 가치변동에 대한 금전적 결과를 회피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선물거래의 구입 또는 통화스왑의 체결에 의하여 책임을 헤지(hedge)하는 행위는 금융위험관리에 해당되고 안전관리회사를 이용하는 것은 금융위험관리가 아니다.

비현금지급이란 채권(notes) 또는 화폐(coins) 형태의 내국환 또는 외국환의 물리적 인도와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급되어야 할 원인행위를 하

는 경우를 말한다. 예금계좌의 차변에 대하여 어떤 금융수단으로 지급하는 것, 수표사용에 대하여 어떤 금융수단으로 지급하는 것, 스마트카드와 같이 1998 지급제도규제법(the Payment System (Regulation) Act 1998)의 범위 내에서 구입된 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것 또는 여행자수표로 지급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지급수단으로 지급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 뿐인 경우와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것과 관련된 사람이 많아 해당규정에서 인정하지 않는 지급수단 또는 그 유사종류는 비지급수단이 아니며, 금융회사의 신용장,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발행한 수표 또는 금융회사에 의한 보증장에 의한 지급도 비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런 것들은 금융상품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일반적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명시적 열거를 통하여 금융상품에 포함하는 명시적 포함조항(specific inclusion)에서는 유가증권(security), 등록투자계획과 관련한 투자계획의 이자, 투자계획의 이자에 대한 법적 또는 공평한 권리 또는 이자, 증권발행을 통하여 이자 또는 권리를 획득하는 옵션, 파생상품, 1995년 생명보험법(the Life Insurance Insurance Act 1995)의 생명보험계약 또는 감채기금증권이 아닌 보험계약(손해보험을 의미하며 회원을 위하여 조합이 급부를 제공하거나 1995년 생명보험법 11(3)(c)에 규정한 급부, 연금 또는 지급을 제공하는 것, 장례급부를 제공하는 것 또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발행하는 것은 손해보험이 아니다.), 보험계약인 생명보험 및 감채기금증권(생명보험을 의미하며 회원을 위하여 조합이 급부를 제공하거나 1995년 생명보험법 11(3)(c)에 규정한 급부, 연금 또는 지급을 제공하는 것, 장례급부를 제공하는 것 또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발행하는 것은 생명보험이 아니다.), 보험계약이 아닌 생명보험 및 감채기금증권(생명보험을 의미하며 회원을 위하여 조합이 급부를 제공하거나 1995년 생명보험법 11(3)(c)에 규정한 급부, 연금 또는 지급을 제공하는 것, 장례급부를 제공하는 것 또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발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1993년 노령연금산업감독법(the 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 1993)에서 말하는 노령연금이자(superannuation interest), RSA(retirement saving accounts), 은행법상 예금(deposit-taking facility), 정부의 담보, 주식 또는 채권, 외환,

등이 포함된다. 보험계약에 대한 명시적 포함은 일부 규정이 보험의 방식이 아니라도 통상 보험계약으로 간주되는 계약과 통상 보험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관련된 규정에 보험규정을 포함하는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금융상품(specific exclusions)에는 적용제외 유가증권(excluded security), 관련기업에 금전을 지급하기 위한 해당기업에 의한 보증, 국가건강법(the National Health Act 1953)에 의한 건강보험, 연방(Commonwealth)이 제공하는 보험, 수출금융보험공사에 의한 보험, 재보험, 신용수단(credit facility) 등이 해당된다.

## 나. 보험분야

### 1) 보험상품의 정의

#### 가) 보험상품

보험은 금융상품의 분류에 있어서 위험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FSRA는 보험상품으로 손해보험·생명보험·투자생명보험(investment life insurance product)을 열거하고 있다. 손해보험·생명보험·투자생명보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규정의 일부가 보통의 보험 방법과 다르나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으로 간주되는 계약과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관련된 보험의 규정을 포함한 계약을 보험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sup>87)</sup>.

손해보험은 생명보험법에서 인정된 생명보험증권(life policy)이나 감채기금증권(sinking fund policy)<sup>88)</sup>이 아닌 보험계약을 의미하고, 생명보험은 생명보험법에서 인정된 생명보험증권이나 감채기금증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생명보험은 보험계약이 아닌 생명보험증권이나 감채기금증권을 의미한다<sup>89)</sup>.

87)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 764A(2)조

88) 감채기금증권(sinking fund policy)은 발행회사가 하나 이상의 특정일에 금전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 금전의 지급과 보험료의 지급 모두가 그 증권이 발행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생존에 의존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생명보험증권<sup>90)</sup>에는 ① 사람의 사망 또는 사람생명의 종료 또는 계속에 의존하는 우발사고의 발생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계약, ② 사람생명의 종료 또는 계속에 의존하는 어떤 조건을 위하여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계약, 사람생명의 종료 또는 계속에 의존하는 어떤 조건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계약, 사람생명의 종료 또는 계속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조건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계약(다만, 이 구문의 목적을 위한 규정에서 정하는 조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영구장애증권(continuous disability policy), 투자계좌계약(investment account contract)<sup>91)</sup>에 해당하는 계약(보험계약 여부에 상관없다), 투자연계계약(investment-linked contract)<sup>92)</sup>에 해당하는 계약 등이 속한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조건 중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오로지 상해사망 또는 특정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만 지급이 이루어지는 계약은 생명보험계약이 아니다.

또한 생명보험업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sup>93)</sup>로는 ① 동업자조직이 그들의 회원 및 피부양인에 대한 급부와 관련한 사업, ② 근로관련법령(Workplace Relations Act)에서 인정하는 피고용인단체의 회원 및 피부양인에 대한 급부와 관련한 사업, ③ 고용주 또는 피고용인 또는 양자가 설립한 조직만을 통하여 고용주 또는 피고용인 또는 양자에 의해 제공되는 피고용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노령연금 급부금, 연금 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획 또는 계

89)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 764A(d), (e), (f)조

90) 호주 생명보험법 제9조.

91) 투자계좌계약(investment account contract)이란 ① i) 사망 또는, ii) 특정일 또는 다수의 특정일이나 특정일전 사망 또는 다수의 특정일의 마지막날에 지급되는 급부를 제공하는 계약과 ② i) 계약에 의한 운영계좌 또는 ii) 계약에 의해 보장된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단위와 관련하여 계산되는 급부를 제공하는 계약 및 ③ 증가되는 계좌를 제공하는 계약(예를들면 납부보험료 또는 이자액)을 말한다. 다만, 보험료 납부자의 책임에 의한 해약금액 또는 계약에 의한 해약수수료 금액이외의 금액에 의해 감액되는 계좌를 제공하는 것은 투자계좌계약이 아니다.

92) 투자연계계약(investment-linked contract)이란 ① 급부를 받는 사람의 특정종류 또는 그룹의 자산의 시장가치와 관련된 가치의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는 급부의 지급액이 본래의 목적인 계약과 ② i) 사망 또는, ii) 특정일 또는 다수의 특정일이나 특정일전 사망 또는 다수의 특정일의 마지막날에 지급되는 급부를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93) 호주 생명보험법 제11조.

약(scheme or arrangement)과 관련된 사업, ④ 호주내에서 불특정인이 아닌 피고용인에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증권의 발행, 그 책임의 인수에 해당하는 사업, ⑤ 생명보험회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i) 장례, 매장 또는 화장에 대한 지급(그러한 의식과 관련한 물품제공 여부에 상관없이)을 구성하는 급부 또는 ii)장례, 매장 또는 화장에 대한 소요비용 및 부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할 목적으로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사업 등이 있다.

노령연금사업도 생명보험업에 속하며, 노령연금상품(superannuation product)이란 노령연금산업감독법(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의 규제를 받는 상품이며 그 종류는 운영기금에 따라 구분된다.

<표 V-10> 호주 노령연금상품의 종류

종 류	특징
regulated superannuation fu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신탁자는 법률상의 회사이거나 기금은 연금형태여야 함.</li> <li>- 신탁자는 법적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법률상 회사이어야 하고, 기본규칙(governing rule)에 기금의 중요목적이 노령연금에 있음을 규정되어 있어야 함.</li> <li>- 신탁자는 APRA나 법에 의해 특정된 기관에 의해 지정되어야 함.</li> </ul>
Approved Deposit Fu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구기금이며,</li> <li>- 법률상의 회사인 RSE licensee에 의해 운영되며,</li> <li>- 특정의 공인된 목적을 위해 운영됨.</li> </ul>
Pooled Superannuation Trus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상 회사가 신탁자인 계약형투자신탁(unit trust)</li> <li>- 법규상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형투자신탁.</li> </ul>

또 다른 연금상품으로 퇴직저축계좌법(Retirement Savings Account Act)을 충족하는 퇴직저축계좌(Retirement Savings Account)상품<sup>94)</sup>으로, RSA상

94)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 764A(h)조

품<sup>95)</sup>은 계좌 혹은 계좌의 개설이나 계약의 체결이 퇴직저축계좌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좌 혹은 계약·자본보장(capital guaranteed)계좌으로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거나 1997년 7월 1일 이후에 개설된 계좌이나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

## 2) 보험업의 정의

호주의 보험규제법률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구분하여 존재한다.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등을 제외한 손해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법(insurance act 1973)<sup>96)</sup>은 보험업을 “보험(재보험 포함)의 방법으로 특정사건의 발생과 관련한 어떤 손해 또는 손상(손상 또는 보상을 지급할 책임을 포함한다)과 관련한 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과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생명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법(life insurance act 1995)<sup>97)</sup>에서 생명보험업(life insurance business)이란 ① 생명보험증권의 발행, ② 감채기금증권의 발행, ③ 생명보험증권에서의 책임에 대한 인수, ④ 감채기금증권에서의 책임에 대한 인수와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 중 일부 또는 모두로 구성된다. 보험부수업무에 대한 의심을 회피하거나 제한을 피하기 위해 보험본업과 관련된 업무는 법정펀드의 자산을 투자, 관리하는 것과 연관된 업무를 포함함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 다. 은행 분야

### 1) 은행상품의 정의

예금은 금융서비스개혁법의 금융상품 분류에 있어서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RSA상품 이외의 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 은행법(Banking Act)을 충족하는 공인예금수취기관(ADI : authorised deposit-taking institute)에 의한 예금

95) 호주 퇴직연금계좌법 제8조

96) 호주 보험법(insurance act) 제3조.

97) 호주 생명보험법(life insurance act) 제11조.

취급기관(deposit-taking facility)을 의미<sup>98)</sup>한다. 여기서 공인예금수취기관은 은행법에서 인가받은 회사를 말하는데 공인예금수취기관에는 은행(국영은행 포함), 건축조합(building societies),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s)을 포함하며 이들은 동일한 Prudential Standards를 적용받으나, “은행” “건축조합” “신용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사용이 가능하다. 대출과 같은 신용상품은 금융서비스개혁법 중 금융상품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출은 FSRA에서 금융상품에서 제외되었으나,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법규를 충족하는 여신(credit), Payment System and Netting Act를 충족하는 공인된 RTGS 시스템 또는 최종위치(position)의 확정과 비현금지급수단의 이전 그리고 Payment System and Netting Act를 충족하는 공인된 RTGS 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위한 수단(facility)에 의해 보장되는 신용을 통해 지급한다면 그 비현금지급수단을 대출이라고 본다.

## 2) 은행업의 정의<sup>99)</sup>

헌법(Constitution)<sup>100)</sup>에서 설명한 은행업 또는 헌법<sup>101)</sup>을 적용받는 회사가 운영하는 업 그리고 일정범위에 있어서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고 본 정의의 취지에 맞게 법에서 정한 다른 금융행위를 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업을 의미한다.

## 라. 증권분야

### 1) 증권상품의 정의

#### 가) 증권<sup>102)</sup>

---

98)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 제764A(i)조

99) 호주 은행법 제5조

100) 국립은행을 제외한 은행, 해당 주에만 영향을 미치는 주립은행, 은행법인, 유가증권 발행기관

101) 외국회사, 연방법을 충족하는 형태의 금융회사

호주의 금융서비스개혁법에 의하면 증권이란 ‘주식·채권·주식과 채권에 대한 법적인 권리 또는 이익 및 증권을 획득할 수 있는 옵션(선택권)’을 의미한다. 또한 투자상품<sup>103)</sup>(managed investment product)도 증권에 포함되는데, 투자상품이란 ‘등록된 투자관리기관을 통한 이익, 법적 혹은 그와 동등한 권리 또는 이익·앞의 이익 또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옵션과 회사법(Corporation Act) 601ED(1)<sup>104)</sup>요건의 하나 이상을 충족한, 미등록 투자관리기관을 통한 이익·법적 혹은 그와 동등한 권리 또는 이익·앞의 이익 또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옵션을 의미한다.

나) 파생상품<sup>105)</sup>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에서 파생상품은 일정한 조건이나 특징을 갖는 계약을 의미하고 있다.

일정한 조건이란 첫째, 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는 미래 시점에 특정한 대가(consideration)의 지급을 요청받는다든 것, 둘째 미래 시점은 본 규정에서 설명하는 기간보다 짧지 않아야 하며, 자산·이자율과 환율 등의 비율(rate)·지수(index)·상품(commodity)과 같은 요소를 통해 대가의 총액 혹은 계약의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동법에서는 파생상품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파생상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반면 파생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계약으로는 한쪽 상대방이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계약, 실물이 이전되기 보다는 상채나 현금결제를 통해 거래하는 파생상품의 특성을 판매자가 인정하지 않는 계약, 보통의 시장이나 인가받은 시장이 아닌 상태에서 어떤 계약과 다른 계약을 상쇄시키는 판매자의 의무를 인정하는 계약, 미래서비스의 제공 계약 등 파생상품이 아닌 계약,

102)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 제761A조

103)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 제764A(1)(b)조, 제764A(1)(ba)조

104) 20명 이상의 직원(member), 투자관리기관의 발기(發起)시 법률상 인격(person) 또는 인격의 연합에 의할 것. 2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 각각 ASIC에 등록할 것.

105)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 제761D조



기타 본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계약 등을 법에서 열거하고 있다.

마. 기타금융상품

1) 외국환 거래<sup>106)</sup>

통화를 사고팔거나, 어떤 통화를 다른 통화로 바꾸는 계약으로 파생상품계약, 즉각적인 대금결제를 위해 통화를 교환하는 계약외국환계약은 금융상품으로써 외국환거래로 인정되지 않는 계약이다.

2) 비현금지급수단<sup>107)</sup>

비현금지급수단이란 실제 거래에 있어서, 지폐나 동전이 아닌 비현금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데 금융서비스개혁법 763D조는 비현금지급수단의 종류로 직불카드(debit card)·수표(chèque)·payment facility(스마트카드와 같이 Payment System(Regulation) Act를 충족하는 지급수단)·여행자 수표(traveller's cheque) 등을 열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보편적이지 않고, 특정인에만 해당하는 지급수단, 본 항목의 범위 외의 facility로서 특정하게 규정된 facility, 금융기관의 신용장, 금융기관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발행하는 수표, 금융기관의 보증서 등은 비현금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106)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 제761A조, 제761A(k)조

107)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 제763D조